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대구광역시서구청

○ 제조사·공급사 : 다넷정보기술

○ 제 품 명 : Smart NAC V5.1 정책서버모듈(1001~2000Node) * 1EA, 정책서버모듈(1~500Node) * 1EA, 차단서버모듈(501~1000Node) * 2EA, 차단서버모듈(101~500Node) * 1EA, 차단서버모듈(1~100Node) * 34EA, 클라이언트(1001~2000Client) * 1,100EA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금11,730,000원(금일천일백칠십삼만원) 이하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명 대구광역시서구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다넷정보기술 (인)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대구광역시서구청
○ 제조사·공급사 : 오픈정보기술㈜
○ 제 품 명 : BLUEMAX NGF 1510 4대, BLUEMAX NGF 310 1대, SECUI MF2 800 1대, XTM-6100 2대, ITU-410T 3대, SNIPER ONE-i 2200 1대, SNIPER ONE-i 2300 1대, SNIPER ONE-d 2200 1대, INSIGHT SWG V4.0 1대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금18,450,000원(금일천팔백사만오천원) 이하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명 대구광역시서구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오픈정보기술㈜ (인)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대구광역시서구청
○ 제조사.공급사 : ㈜한아아이티
○ 제 품 명 : OS9907 2대, OS6860 31대, OS6360 4대, OS6450 1대
OS6560 33대, AEN20240 4대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금26,967,000원(금이천육백구십육만칠천원) 이하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명 대구광역시서구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한아아이티 (인)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대구광역시서구청
○ 제조사·공급사 : ㈜아이넷뱅크
○ 제 품 명 : C9407R 4대, C9404R 2대, C2960 1대, C9200L 52대, ISR4331 1대, ISR 4321 2대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금34,483,000원(금삼천사백사십팔만삼천원) 이하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명 대구광역시서구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아이넷뱅크 (인)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대구광역시서구청
○ 제조사·공급사 : ㈜씨엘시스템즈
○ 제 품 명 : 멀티미디어ACS시스템V3.0 1대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금2,665,000원(금이백육십육만오천원) 이하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명 대구광역시서구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씨엘시스템즈 (인)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대구광역시서구청
○ 제조사·공급사 : ㈜유비라인
○ 제 품 명 : UBIS-iFAX V1.0, UBIS-DX V2.0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금8,190,000원(금팔백십만구천원) 이하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명 대구광역시서구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유비라인 (인)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대구광역시서구청
○ 제조사·공급사 : 아이펙스(주)
○ 제 품 명 : UCM-S10K, LIP-9020 611대, 1050i 227대, SLTM8 28대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금20,372,000원(금이천삼십칠만이천원) 이하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주기관명 대구광역시서구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아이펙스(주) (인)